##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830

발의연월일: 2021. 7. 30.

발 의 자 : 홍기원 · 황운하 · 김병기

송옥주 · 천준호 · 홍정민

이용우 · 신현영 · 윤준병

정일영 · 정정순 · 김경만

조응천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여 여객이 열차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. 그런데 여객과 달리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열차 내 흡연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.

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은 화재발생 등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0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3(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) 철도종사자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0조의3(철도종사자의 흡연 금
	지) 철도종사자는 업무에 종사
	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
	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82조(과태료) ① ~ ③ (생	제82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
략)	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1.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
	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
	에서 흡연을 한 사람
<u>1.·2.</u> (생 략)	<u>2.·3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
	같음)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